부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3월 10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3월 1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제11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5년 3월 18일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사회복지과장 이춘구)

□ 제안이유

○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내 장애인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 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 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공연장·집회장·관람장 및 운동시설 별로 설치기준 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함.(안 제4조제1항)
- 시·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·융자심사와 설계심사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. (안 제4조제2항)
-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·통로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.(안 제5조)
- 장애인용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함.(안 제6조)
- 기존의 공연장 등은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2년간 유예하도록 함. (안 부칙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하는 것이 애매하고, 문안이 광범	○ 경기도 준칙안에 의해 만들 어졌으며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
가 있다고 보는데?	
	○ 일반적으로 상부기관의 준칙안에 의해 조례를 만들고 있으며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355호
의결	2005.3.24
년월일	(제118회)

제출년월일 : 2005. 3. 10.

제 출 자: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○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내 장애인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공연장·집회장·관람장 및 운동시설 별로 설치기준 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함.(안 제4조제1항)
- 나. 시·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·융자심사와 설계 심사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. (안 제4조제2항)
- 다.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·통로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.(안 제5조)

- 라. 장애인용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함.(안 제6조)
- 마. 기존의 공연장 등은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2년간 유예하도록 함.(안 부칙제2항)

부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징애인관람석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운영·관리하는 공연장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장애인"이라 함은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의 규정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.
- 2. "공연장등"이라 함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·집회 장·관람장·체육관 및 운동장중 부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운 영·관리(위탁운영을 포함한다)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3. "최적관람석"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안에서 관람하기 가 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.
- 4. "장애인보호자"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- 제4조(최적관람석의 설치) ①각 공연장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 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②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·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야 한다.
- 제5조(이동편의시설 확충)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 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 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6조(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)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.
- 제7조(민간운영시설의 권장)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.